

◎◎◎◎ 氷蓄熱 冷房器機 普及擴大를 ◎◎◎◎ ◎◎◎◎◎◎◎◎ ◎◎◎◎◎◎◎◎◎◎ 위한 장기지원정책 (下) ◎◎◎◎

—夏季 電力需要 Peak 억제 및 電力需給不安 극복—

黃奎浩

動力資源部 電力運營課 行政事務官

4. 氷蓄熱冷房器機의 普及・擴大를 위 한 장기지원정책

가. 推進方向

우선 정부·한전·기계제작업체간에 役割을 分擔하여 제반 支援政策手段을 다음과 같이 推進함으로써 빙축열 냉방기기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推進方向>

- 정부 : 氷蓄熱器機 製作業體 및 同器機 설치 건물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普及促進 유도
- 한전 : 氷蓄熱器機 설치건물에 대한 한전 支援財源擴大, 電氣料金制度 개선 및 弘報
- 기계제작업체 : 氷蓄熱器機 관련 技術開發 및 品質向上

이러한 役割分擔방식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政策을 기계제작업체에 대한 지원, 기기설치 건물주에 대한 지원 등의 순으로 논술코자 한다.

나. 氷蓄熱器機 제작업체에 대한 支援政策 수단

(1) 金融支援

우선 國産化가 가능한 품목으로서 大量生産이 용이한 機械類·部品·素材에 대하여 ‘기계류·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연리 6.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長期融資條件인 中小企業構造調整資金을 동기제작업체에 支援할 계획이다.

그 대상품목으로는 氷蓄熱槽·中小型 패키지 蓄冷 시스템, Ice Ball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冷凍·冷蔵用 氷蓄熱 시스템·潛熱材를 이용한 새로운 蓄冷 시스템 등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이러한 품목을 ‘工業基盤技術開發課題’로 선정하고 동품목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3억원(연리 6.5%, 2년 거치 3년 상환)의 工業發展基金을 支援토록 할 계획이다.

(2) 稅制減免

‘小型 패키지 蓄冷 시스템’을 개발하여 中央

받도록 하였다.

－税金減免：(총설치비－受電・配電設備) ×

(3~10)/100

－損金算入：취득가의 30/100~50/100

－特別償却：취득가의 90/100

※ 취득가=冷凍機+蓄熱槽+冷却塔+附帶
 팜프

(2) 金融支援

그리고, 동력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石油事業基金중에서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으로 운용·활용하고 있는 資金에서 빙축열냉방기기를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冷凍機를 제외한 총설치비의 90%까지 연리 5%, 3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92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石油事業基金 支援指針을 '92

년 2월22일 개정공고한 바 있다. 아울러 빙축열냉방 시스템을 '에너지節約施設'로 인정하여 '92년 3월19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그러나, 빙축열냉방기기 설치건물주에 대한 金融支援을 擴大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에너지節約施設資金'의 융자대상을 대기업체까지도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融資規模도 점차 擴大하여 연간 200억원의 수준으로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개정된 '9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石油事業基金 支援指針은 중소기업에만 국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金融與信運用規程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대기업체 및 호텔·콘도·사무용 빌딩 등 전기과소비부문에는 융자지원이 곤란한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번 6월 1일부터 개정 발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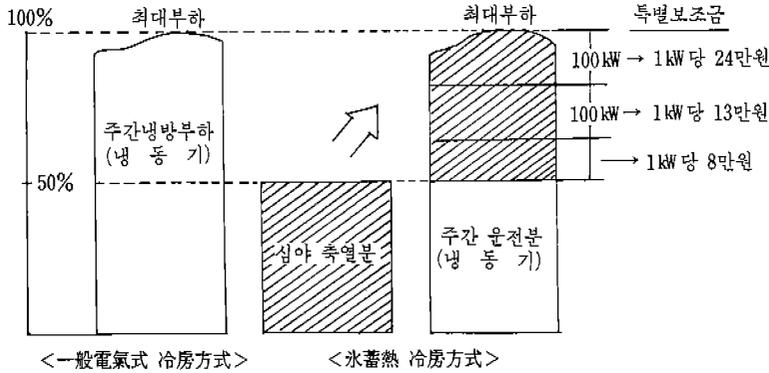
<표 8 > '92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石油事業基金 支援指針 改定(案)

현행	개정(안)	비고	현행	개정(안)	비고
1~2(생략)	1~2(좌동)		합계 1,106		
3. 지원사업 내역	3(좌동)		나. 융자지원대상자	(좌동)	
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가(좌동)		1) 융자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고, 융자지원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음		
구분			"비고란"	빙축열기기 구입부문에 대하여는 "비고란"의 「중소기업에 한함」을 삭제	
○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한함	빙축열기기 구입부문에 대하여는 "비고란"의 「중소기업에 한함」을 삭제	
－연구개발 용자10				2) 빙축열기기 구입부문에 대하여는 예외조항 신설	
보조10					
－실용화			2) 금융기관 여신 운용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여신금지부문 업종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숙박·음식점 및 유통업종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고효율제품 생산					
○ 고효율제품 구입	○ 빙축열기기 구입	지원규모 확대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200억원				
－창업지원			4~15(생략)	4~15(좌동)	
－투자지원					
○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공정개체					
○ 공업단지 용자240					
시설 및 용자666					
공정개체					
○ 공업단지 용자 30					
열병합발전					
○ 지역난방					
○ 주택단열, 개수					

<표 9>

減少電力	처음 100kW까지	다음 100kW까지	200kW 초과	한도액
特別補助金	24만원/kW	13만원/kW	8만원/kW	5,500만원/호

※ 감소전력 : 일반식 냉방설비용량 - 빙축열 냉방설비용량



<그림 7>

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빙축열 냉방기기의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용자지원대상범위의 확대 및 용자지원자금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기도 하다(표 8 참조).

(3) 韓電補助金 擴大 · 지원

아울러, 한전에서도 빙축열냉방기기를 설치하

는 건물주에게 최고 5천5백만원까지 特別補助金を 지원하도록 制度化한 바 있다(전기공급규정개정, '91.6.1).

이에 따라, 一般電氣式 냉방시설용량에서 氷蓄熱式 냉방설비용량을 뺀 만큼의 減少電力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표 9 및 그림 7 참조).

그리고, 이러한 한전의 지원금에 대한 損算入 등 稅務處理上의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전기공급규정을 표10과 같이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까지 연면적 2천평 건물규모 총 7,700개 건물(1만평 규모 1,858개소에 해당)에 한전보조금을 약 1,800억원의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4) 深夜料金の 引下

한편 빙축열냉방기기는 深夜電氣料金を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一般電氣料金の 1/3 수준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電氣料金에서도 일반전기식의 절반 수준으로 운

<표10> 韓電 電氣供給規程 改定(案)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109조(전력부하 평준화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 ① 전력계통 부하평준화 또는 전기 아껴쓰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가 정하는 기기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의 일부를 당사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력부하관리(제8장)에 추가조항 신설
(신설)	② 제1항의 설치비 보조금액·조건·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당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영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표11 참조).

(5) 건물주의 實益

참고로 앞에서 줄곧 논술한 金融·稅制·韓電支援金 등의 制度가 기초치 완료됨에 따라 이러한 각종 혜택을 감안할 경우 건물주의 實益을 事例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1만평 규모의 건물에 一般電氣冷房을 할 경우 설치공사비가 4억6천3백만원 정도 소요되나, 氷蓄熱冷房의 경우는 6억8백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稅制減免·低利融資·韓電補助 등으로, 실제로는 氷蓄熱方式이 오히려 약 5천5백만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심야전기사용으로 연간 4천9백만원의 전기요금도 별도로 절감이 가능하다.

이를 개조식으로 표기해 보면,

	一般電氣式	氷蓄熱式	支 援	差
設置費用 (백 만 원)	463	608	200	△ 55
	(一般 395 + 氷蓄 213)			
電氣料金 (백만원/연간)	95	46	-	△ 49
	(晝間 33 + 深夜 13)			

※ 支援(200) = 稅制減免(56) + 低利融資(91) + 韓電補助(53)
 - 稅制減免(56) : {總設置費(608) - 受電·附帶設備(48)} × 10%
 - 低利融資(91) : {總設置費(608) - 冷凍機(135)} × 90% × 金利差(5%) × 8年 - 3年据置後 5年間 元利金償還
 - 韓電補助(53) : 401kW Peak 抑制{一般電氣式(990kW) - 氷蓄熱式(589kW)} × (24~8만원)/kW = 100kW × 240 + 100kW × 130 + 201kW × 80

와 같다.

(6) 일반전기식, 빙축열식 냉방의 경제성 비교

이를 1천평, 3천평, 1만평, 광화문 청사 등을 기준으로 일반전기냉방과 빙축열식 냉방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해 보면 표12와 같다.

표12에서와 같이 일반전기식 냉방보다 빙축열냉방이 경제성이 있지만, 한전보조금은 기기 설치후에 지원하게 되어 초기에 건물주의 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 관공서는 용자대상이나 세금감면혜택이 없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표12를 산출하면서 용자금리

<표11> 일반 전기냉방과 빙축열냉방의 전기요금 비교

-전기요금 價格

적용 기준	전 기 요 금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일반전기냉방 업무용 전	4,370원/kW	76.80원/kWh
빙축열냉방 심야전력(을)	4,370원/kW	심야시간 : 25.30원/kWh 기타시간 : 65.60원/kWh

※ (1) 심야전력 전력량 요금단가: 하계업무용의 30% 수준
 (2) 기본요금 적용방법
 · 업무용 전력: 연간 적용(12개월)
 · 심야전력(을): 일년중 사용될만 적용(4개월)

-연간 전기요금 적용예시(1만평 규모의 경우)

구 분	계약 전력 (kW)	연간 사용량 (kWh)	연간 전기요금 (천원)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계
일반전기냉방	990	596,134	51,917 (862%)	43,550 (108%)	95,466 (207%)
빙축열냉방	589	심야 455,454 기타 352,598	6,024 (100%)	40,193 (100%)	46,217 (100%)

는 5%로 하되 시중금리는 연리 10%를 산정하고 양쪽의 이차차액을 현가화하여 장기용자 지원액을 산출한 것임을 밝혀둔다.

(7) 일반전기식, 빙축열식, 가스식의 냉난방 경제성 비교

여기에 덧붙여 냉방설비 외에 난방설비를 할 경우 일반전기식·빙축열식·가스식에 의한 냉·난방 공사비의 경제성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같아 1천평, 1만평 규모의 건물물 사례로 분석해 보면 표13과 같다.

최근 氷蓄熱冷房機의 普及·擴散을 위해서는 심야전기요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電氣料金體系의 조정시 보급이 促進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8) 國民住宅債券의 일부매입 감면

현행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면 신규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一定額 또는 一定比率로 第一

<표12> 일반전기 냉방식과 빙축열 냉방식의 경제성 비교

		일반 전기식 (a)	빙 축 열 식 (b)	차 (b - a)	
1천평 건 물	시 설 용 량 (kW)	120	66	△ 54	
	설 치 공 사 비(백 만 원) (A)	54	87	33	
	지 원 (B)	소 계(백 만 원)	-	34	34
		장 기 용 자	-	13	13
		한 전 보 조	-	13	13
		세 금 감 면	-	8	8
	차(A - B)	54	53	△ 1	
연 간 전 기 요 금 (백만원)	12	7	△ 5		
투 자 회 수 기 간 (연)	기 준	회수 불필요			
3천평 건 물	시 설 용 량 (kW)	335	196	△139	
	설 치 공 사 비(백 만 원) (A)	145	206	61	
	지 원 (B)	소 계(백 만 원)	-	79	79
		장 기 용 자	-	31	31
		한 전 보 조	-	29	29
		세 금 감 면	-	19	19
	차(A - B)	145	127	△ 18	
연 간 전 기 요 금 (백만원)	32	15	△ 17		
투 자 회 수 기 간 (연)	기 준	회수 불필요			
6,595평 (과천청사 4 등)	시 설 용 량 (kW)	653	388	△265	
	설 치 공 사 비(백 만 원) (A)	305	410	105	
	지 원 (B)	소 계(백 만 원)	-	141	141
		장 기 용 자	-	61	61
		한 전 보 조	-	42	42
		세 금 감 면	-	38	38
	차(A - B)	305	269	△ 36	
연 간 전 기 요 금 (백만원)	63	30	△ 33		
투 자 회 수 기 간 (연)	기 준	회수 불필요			
1만평 건 물	시 설 용 량 (kW)	990	589	△401	
	설 치 공 사 비(백 만 원) (A)	463	608	145	
	지 원 (B)	소 계(백 만 원)	-	200	200
		장 기 용 자	-	91 ¹	91
		한 전 보 조	-	53 ²	53
		세 금 감 면	-	56 ³	56
	차(A - B)	463	408	△ 55	
연 간 전 기 요 금 (백만원)	95	46	△ 49		
투 자 회 수 기 간 (연)	기 준	회수 불필요			
23,595평 (광화문 청 사)	시 설 용 량 (kW)	2,336	1,390	△946	
	설 치 공 사 비(백 만 원) (A)	1,092	1,435	343	
	지 원 (B)	소 계(백 만 원)	-	401	401
		장 기 용 자	-	214	214
		한 전 보 조	-	55	55
		세 금 감 면	-	132	132
	차(A - B)	1,092	1,034	△ 58	
연 간 전 기 요 금 (백만원)	224	109	△115		
투 자 회 수 기 간 (연)	기 준	회수 불필요			

<표13> 일반식, 빙축열식 및 가스식 냉난방기기의 경제성 비교(1천평, 1만평 건물 기준)

		일반전기식	빙축열식	가스식	
1천평 건물	시 설 용 량 (kW)	120	66	45	
	설 치 공 사 비(백 만 원)(A)	68	101	79	
	원 (B)	지 소 계(백 만 원)	—	34	11
		장 기 용 자 한 전 보 조 세 금 감 면	—	13	6
	차(A - B)	68	67	68	
	연 간 전 기 · 가 스 요 금 (백만원)	20	13	16	
	투 자 회 수 기 간 (년)	기 준	회수 불필요	회수 불필요	
1만평 건물	시 설 용 량 (kW)	990	589	426	
	설 치 공 사 비(백 만 원)(A)	577 (냉방: 463)	703 (608)	603	
	원 (B)	지 소 계(백 만 원)	—	200	81
		장 기 용 자 한 전 보 조 세 금 감 면	—	91 ¹⁾	45 ⁴⁾
	차(A - B)	577	503	522	
	연 간 전 기 · 가 스 요 금 (백만원)	161	110	146	
	투 자 회 수 기 간 (년)	기 준	회수 불필요	회수 불필요	

- ※(1) 91=(총설치비-냉동기)×90% 용차지원금을 연리 5%의 금리로 3년 거쳐 5년 분할 상환할 때 시중금리를 10%로 할 경우와 비교하여 용차지원금을 現價化한 금액의 이익을 의미
 (2) 53=(일반전기식-빙축열식 냉방)의 차액에 대한 한전지원금을 의미
 (3) 56={총설치비(608)-수전·배전설비(48)}×10%
 (4) 45=냉동기의 90% 용차지원을 연리 5%의 금리로 1년 거쳐 3년 상환시 용차지원금의 이익을 現價化한 금액의 이익
 (5) 36=냉동기의 90% 감면액
 위와 같이 산출함에 있어 기본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였음을 첨기한다.

—산출전제

- ① 냉방방식별 구성: 일반전기식(전기 100%): 일반전기 냉동기+가스보일러
 빙축열식(전기 60%, 빙축열 40%): 빙축열 냉동기+가스보일러
 가스식(전기 30%, 가스 70%): 가스흡수식 냉온수기
- ② 전기요금 적용단가: 일반전기식·가스식: 76.80원/kWh(일반용 전력)
 빙축열식: 25.30원/kWh(심야전력)
- ③ 가스요금 적용단가: 176.25원/㎥

種 國民住宅債券을 買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빙축열 냉방기기를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표14, 15 참조).

- 감면범위: 전체건물 연면적중에서 빙축열 기기에 의해 냉방하는 면적에 대하여 총 주택채권 매입액의 30~50% 減免
- 減免方案: 현행 제도활용 또는 일부 제도 보완

라. 普及 促進方案

(1) 氷蓄熱器機의 설치의무화

건물신축시 氷蓄熱 또는 가스方式에 의해 冷房을 하도록 '92년 5월 현재 건설부가 개정 추진중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시 말하면 冷房設備의 설치 기준을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동기준제정시 동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建築法 施行令 行政法令 제87조 제2항)하

<표14> 住宅建設促進法 施行令 제17조 別表: 제1종 國民住宅債券 買入對象者와 買入基準

	현행 규정	조치 방안
제1안 (현행 제도 활용)	<p><별표3> 3항-다목-(8)호 1~2(생략) 3.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나(생략) 다.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건설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입대상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7)(생략) (8)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태양열 주택의 보급확대 등 국가정책상 필요하거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p>	<p>(8)호에 의거 국가정책상 하절기 전력수요 피크 억제 및 전력수급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병축열기기를 설치하는 자에 대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감면을 건설부 및 재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 □ 병축열기기 설치자에 대한 주택채권 매입감면을 제도화</p>
제2안 (시행령 개정)	없음	<p>(신설)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력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시설중 축냉방식의 열원장치를 설치하는 자</p>

고, 아울러 '92년 6월 1일 제정 공포한 '建築物의 設備基準 등에 관한 規則'에서 1천평 이상의 업무·판매시설·연구소, 600평 이상인 숙박시설·기숙사·유스호스텔·병원, 대형건축물로서 공기조화설비나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등을 設置義務化 對象建築物로 정하고 冷房設備의 설치 및 설계기준은 동력자원부 '告示'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 施行時期는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

쳐 '9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建築法令上的 주요규정을 이번 기회에 열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91년 5월 1일 全面改正·公布된 建築法改正法律이 1년이 경과된 '92년 6월 1일부터 발매·시행되는데, 동법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서 '建築物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規定에 의한 命命이나 處分과 關係法令이 정하는 基準에 適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건축물의 熱損失防止)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熱의 損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제2항에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동력자원부 장관과 협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냉방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에서 세부기술적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앞에서 열거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금번 6월 1일 제정 공포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연구소,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유스호스텔·기숙사·병원,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력자원부 장관이 건설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

<표15> 주택채권 감면액 수준예시

○ 산출전제

- 감면수준: 빙축열기기에 의하여 냉방하는 면적의 30%를 주택채권 매입감면(건축허가시)
- 주택채권 매입감면액 = 빙축열 냉방면적 × 30% × 채권매입단가
- 주택채권 매입단가: 백화점, 사무용 건물 - 평당 4,300원, 관광호텔 - 평당 1,650원
- 관광호텔, 대형목욕탕의 경우 연면적의 80%를 빙축열 냉방면적으로 가정

	규 모 (평)			실제 감면효과 (만원)			비 고
	연 면 적	냉방면적	빙축열냉방면적	현 행	감 면 액	실제 매입액	
그랜드백화점 (강남구대치동)	9,200	7,360	960	3,956	124	3,832	일반전기식+빙축열식
미도파백화점 (노원구삼계동)	22,000	13,030	13,030	9,460	1,681	7,779	빙축열식
쌍용자동차연구소 (강남구도곡동)	6,250	4,670	4,670	2,688	602	2,086	"
삼성본관 (중구태평로)	25,260	18,945	18,945	10,862	2,444	8,418	"
관광호텔	5,000	4,000	4,000	825	198	627	"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규정에 따라 동자부는 '냉방설비의 설치 및 설계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계획이다.

항에 전기에 의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규정 마련].

5. 向後 課題

(2) 深夜時間帶의 연장

종래 8시간만을 심야시간으로 認定하였으나 이를 10시간으로 늘림으로써 氷蓄熱冷凍機 시설용량을 종전보다 14% 정도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냉동시설투자비에서도 그 비용을 감면하여 보급이 촉진되도록 조치하였다.

'92년 5월 26일 국내에 公布·發効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協約'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얼 의정서'에 따라 일반 냉동·냉장설비,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산업용 설비 등에 광범위하게 使用되고 있는 프레온가스(CFC)의 사용이 앞으로 2000년부터는 규제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업계·학계 등이 힘을 합쳐 CFC의 대체냉매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빙축열 냉방 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문제에 있어서 電氣事業法上的 電氣安全管理者 외에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따른 冷凍技士의 선임문제도 同一設備에 二重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자의 선임 축소문제도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氷蓄熱 冷房 시스템의 부속기기·부품에 대한 國產化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電力關係部處·機關·學界·研究所·기기 제작업체 등간에 유기적인 協助體制의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3) 환경처 燃料使用告示의 改正

현행 환경처 告示('91. 4. 11)중 '燃料使用告示'에 있어서는 그 適用排除對象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전기·태양열·풍력 등에만 규제를 안하고 있어, 冷房으로 이용되는 電氣의 경우 일선 시·도가 이를 확대해석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氷蓄熱冷房은 냉방사용을 규제하고 가스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冷房時 가스 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地域에서 빙축열기기에 의한 냉방도 보급 권장키 위해 환경처 연료사용규제고시를 다소 보완할 계획이다[보완대상: 제 3조(적용 배제) 제 1